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동승 의원 외 23명

나. 의안번호 : 제1419호

다. 발의일자 : 2016. 9. 26

라. 회부일자 : 2016. 10. 14

2. 제안사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계량기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의 일부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임할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부담으로 함(안 제5조)
- 나.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안 제10조, 별표 4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계량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공업용수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계량기 시험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계량기의 이상 시험(안 제5조)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 제5조제1항1)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공업용수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으며,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이 없어 단순히 신고가 시장에게 알리는 선언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안 제5조제1항과 같이 공업용수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본인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의 내용을 고려하여 조 제목을 “계량기의 이상 시험”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 공업용수 수요가 등은 계량기의 고장 또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2항은 계량기 시험결과 오차 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사용공차 범위 초과시 공업용수 사용량 및 요금의 정정,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계량기 고장 또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험을 청구한 경우, 시험에 필요한 검정 수수료, 수리비용 및 계량기 대금을 청구인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까지도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안 제5조제3항과 같이 계량기 이상이 확인된 경우, 계량기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지 않고 시장이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²⁾」에서도 시험결과 계량기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제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2)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 규정(안 제10조, 별표 4)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위임할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안 제10조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별표 4 신설)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2)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 공업용수에 공급에 관한 별도의 조례 없이 본 조례에서 공업용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